

2003년 농림부 육계분야 주요 사업

농림부는 「2003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발간하고 각 해당 기관에 사업공고 등 업무추진에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 지침서는 2003년도 사업시행요령과 2004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본고는 육계분야 사업중 주요 내용에 대한 사업을 정리한 것이다.

가축 계열화

가축계열화는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 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03년도 사업비의 경우 2개소 총 35억6천7백만원이다(육성코리아 11억6천7백만원, 동우 24억원). 자금지원대상자는 시·도지사로부터 계열화사업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비 지원방법으로는 계열주체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열농가 생산시설은 축산종합자금사업의 시설자금 지원 또는 가축계열화사업에 포함하여 계열주체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계열주체를 통하여 지원할 경우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대상농가를 선정한다.

2004년도 사업신청 자격은 축산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신고·허가·등록된 종계 및 부회장, 배합사료 공장, 도계장, 육가공장 사업중 2종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우선순위는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동 처리장과 연계하여 계열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자이다.

계열사업자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사업장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2003년 1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닭개량 사업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개체를 찾아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하게 되는 닭개량사업은 시·군에 종계장 신고를 필한 농장을 대상으로 검정소 검정과 일반검정을 병행하여 추진하게 된다(검정소 검정의 경우 육용계는 12,480수).

2003년도 사업비는 보조 3억1천6백만원, 자부담 1억3천7백만원으로 총 4억5천3백만원이 사료비와 시설비로 지원된다.

축산 자조활동자금 조성

축산 자조활동자금 조성은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축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자금 조성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축산분야별로 자조금 조성액의 100% 범위 이내에서 지원된다.

2003년도 사업비는 축발기금 26억6천8백만원, 자부담 26억8천8백원으로 총 53억3천6백만원이다.

2004년도 사업신청 자격은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축산단체로 2003년 3월 31일까지 사업담당기관에 신청하게 된다.

규격닭 출하촉진지원

규격닭 출하촉진지원은 육계 출하체중을 증대하여 닭고기 생산비 절감과 닭고기 생산성 향상을 통한

수출 증대를 꾀함과 나아가 육계를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03년도 사업비는 7백만수 36억6천6백만원이 용자로 지원되며, 육계계열화업체 중 닭고기를 수출하는 업체 또는 농가에서 규격닭 출하실적 확인서를 수출업체에서 받아 시·군에 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단가는 규격닭 출하체중 2.5kg시 수당 500원이며, 지원조건은 1년거치 일시상환, 연리 4%이다.

■ 닭고기 부분육 가공시설 설치지원

닭고기의 부분육·냉장육 유통체계 활성화로 닭고기 수출확대와 닭의 위생적인 도축·가공으로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닭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닭고기 부분육 가공시설 설치에 자금이 지원된다.

사업대상자는 육계계열화업체 중 닭고기 가공시설을 보완하거나 별도의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2003년 사업비는 1개소에 용자 17억5천만원, 자부담 7억5천만원이고, 지원조건은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닭고기 부분육 가공을 위한 절단, 발골, 포장, 보관 등의 시설설치자금으로 지원된다.

■ 닭고기 체인점 설치지원

닭고기 체인점 설치지원은 닭고기 브랜드육의 판매망 구축을 통해 국내산 브랜드육과 수입육 시장 차별화로 국내산 닭고기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으로 사업대상자는 생산자 단체 및 계열화업체로서 닭고기 브랜드 등록이 되어 있고, 육기공공장을 운영하면서 직영 판매장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다.

2003년도 사업비는 20개소에 용자 1백36억5천만원, 자부담 58억5천만원으로 총 1백95억원이고 지원조건은 연리 5%,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판매장 시설비, 주방설비 및 기기 등 시설비와 점포구입비 등으로 지원된다.

■ 가축질병근절대책

구제역·돼지콜레라 재발방지 및 돼지오제스키병·닭뉴كت슬병 등 주요 악성가축전염병 근절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방역 지원 및 민·관 공동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되는 가축질병근절대책에는 농장 채혈활동비 및 채혈기자재 지원사업, 축산농가 소독약품 공급사업, 농가 방역교육 및 홍보사업, 전염병 발생신고·방역관리 위반농가 신고포상금 지급 등이 있다.

2003년도 사업비는 농장채혈활동비 및 채혈기자재 지원비 39억1백만원, 소독약품 공급 54억4천만원, 교육·홍보 2억6천5백만원, 신고포상금 1천만원 등 총 2백62억4천8백만원이 지원된다.

■ 가축방역

가축방역은 가축전염병의 발생·蔓延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경쟁력 제고와 구제역·돼지콜레라 재발방지 및 돼지오제스키병·닭뉴كت슬병 등 주요 가축 전염병의 조기근절을 통한 축산물 수출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내용은 긴급방역재료비, 예방약품 등 공급, 예방접종 시술비, 수의사 연수교육, 살처분보상금 및 도태장려금,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지원 등이 있으며, 2003년도 사업비는 총 2백16억2백만원으로 사업대상은 시도(군), 가축위생시험소(44개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며, 지원기준은 국고 70%, 지방비 30% 수준이다(세부사업별로 지원기준 상이).

이 중에서 예방약 지원과 관련 뉴كت슬병에 대해서는 부화장에 6억수분 24억원과, 농가에 4억수분 16억원(국비 8억원, 지방비 8억원)이 지원되며,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해서는 4백만수분, 4억4천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추백리 검진에는 18만4천수분, 2천3백원이 지원된다.

가축혈청검사사업비는 총 5억5천4백68만원과, 살처분보상금·도태장려금으로 60억원이 지원된다.

200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농정시책

제목(사업명)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명 및 시행일	변경사유 및 효과	담당과명 (전화번호)
1. 농가부채 특별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정책 자금 연 4~5% ○ 연대보증피해 자금 연 5%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정책자금 연 3% ○ 연대보증피해자금 연 3% ○ 모든 부채대출자금을 1년이상 조기상환할 경우 1년간 이자액의 100분의 30을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03.1.1)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03.1.1)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0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농가 경제회복 지원 	협동조합과 (500-1698 ~1699)
2. 외국인농업 연수 제도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연수생 5,000명을 순차적으로 도입 - 연중작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원에 시설버섯, 낙농한육우·양돈·양계 등 축산분야에 활용 - 농협중앙회에 "외국인농업연수협력단"을 설치하여 승출기관과의 계약, 연수업체 추천 및 연수생관리 등의 업무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관리법제19조의2 ('01.12.29) ○ 시행령 제24조의2('02.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 해소 	농촌인력과 (500-1686)
제목(사업명)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명 및 시행일	변경사유 및 효과	담당과명 (전화번호)
1.축산업등록제 도입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소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사육업 및 계란집하업의 경우 시장·군수에게 등록토록 함 ○ 종축업·부화업 : 시장·군수에 신고제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법('03.12) - 시행후 계란집하업은 6월이내에, - 소사육업 등 가축사육업은 시행후 2년 내에 등록의무 - 종축업·부화업은 즉시시행 * 법시행 이전의 신고를 등록한 것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물위생수준향상을 위해 기축사육단계의 관리강화 필요 ○ 등록농가에 방역소독시설·분뇨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축사면적당 적정두수를 사육토록 유도하여 방역 및 위생수준 향상 등 도모 	축산정책과 (500-1896)
2.소·돼지·닭 도축장HACCP 전면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평균도축 실적이 소 30두, 돼지 300두 및 닭 30천수 이상인 도축장에 한해 HACCP 의무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소·돼지·닭 도축장에 HACCP 의무적용 (도서지역 제외) 	○ 축산물가공처리법('03.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령에 의거 연차적으로 HACCP 의무적용 대상 도축장을 확대 	축산물위생과 (500-1918)
3.도축장 의무 도축 대상 기축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축종 (소·말·양·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 축종 (닭, 오리, 사슴, 토끼,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꿩 등 8개 가축 추가)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0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목적의 식육에 대한 위생적 도살처리 및 검사관의 위생검사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성 제고 	축산물위생과 (500-1918)

제목(사업명)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명 및 시행일	변경사유 및 효과	담당과명 (전화번호)
4. 축산물 등급 판정 수수료 징수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판정신청자 또는 출하자로부터 등급판정 수수료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액(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2,000원/두 · 돼지: 380원/두 · 계란: 0.5원/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법('0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2003년부터 수수료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2001.1.1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수입개방 등으로 수수료 징수 시기를 2년간 유예 	축산물위생과 (500-1922)
5.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			○ 가축전염병예방법 ('03.6)		가축방역과 (500-19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염병 발생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비공개 조치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염병 발생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비공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염병 발생 신고자의 불이익 처분 등을 방지하여 신고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에 대한 가축방역 교육실시 의무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축산단체가 농가에 대해 가축방역 교육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농가의 방역관리를 위해 방역교육을 실시토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특수법 인화 	○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특수법인으로 하고 정부의 방역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본부 기능과 민간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거래기록의무화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확산방지를 위해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축종의 경우 가축거래기록을 유지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학조사의 실효성 제고 및 질병감염 축의 불법 유통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설비 및 실시대상 확대, 별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설비설치대상 대상 : 300㎡ 이상 농장, 도축장, 가축시장 등 ○ 소독대상 : 농장, 가축운송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실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농장, 마을 질병관리 등급 제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설비설치대상 추가 : 집유장, 사료업체, 종축장, 부화장, 축분비료업체 - 미설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종축장에 대해 인증요령 운영(농림부 고시) ○ 소독대상 추가 : 원유, 동물약품, 사료, 분뇨운반차량 (과태료는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예방법 ('0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체 전파 위험이 높은 축산관련 시설과 차량 등에 대한 소독 의무화로 전염병 확산 방지 ○ 우수농장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방역효과 제고 	가축방역과 (500-1938)

제목(사업명)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명 및 시행일	변경사유 및 효과	담당과명 (전화번호)
○ 발생지역 이동제한 등 방역대상 확대	○ 가축(수송차량 포함)에 한해 격리·억류·이동제한 등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마을단위로 방역·위생관리 실태를 평가, 등급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농장·마을은 방역비용 등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예방법 ('03.6) 		가축방역과 (500-1938)
○ 발생신고 지연등 방역조치 위반농가 처벌 강화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지연시 사육시설 폐쇄 또는 사육제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차량 등에 대하여도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사체 처분시 환경오염 방지의무화	○ 신고지연농가에 살처분보상금 차등지급(평가금액의 40%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미실시 등의 사유로 전염병 확산 원인 제공 농가 보상금 차등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처분 가축 매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 	
○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 비용 지원	○ 방역관 지시에 따라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체 처분시 주변 환경 오염방지 조치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살처분 농가 피해를 보전 	
○ 휴대 검역불법반입자에 대한 법처분 현실화	〈신설〉 ※ 법적 근거없이 생계비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처분 이행 농가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생계 안정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류 등 휴대검역물의 불법반입행위를 최소화 하여 병원체 유입 기회 차단 효과 도모 	
	○ 미신고자에 대해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신고위반 시점이 불명확하고 외국인 등에 대한 벌금 등 법적 처분에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검역물 반입자는 입국장에서 신고토록 하고 ○ 현장에서 범칙금을 부과, 10일내 납부토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내 범칙금미납부시 검찰에 송치하여 징역 또는 벌금조치 			